

【논 문】

조선과 여진의 貂皮 교역 성행과 그 영향*

한 성 주**

Ⅰ 차 Ⅱ 례 Ⅲ

- I. 머리말
- II. 여진의 조선 내조와 초피
- III. 사적 무역의 전개와 성행
- IV. 초피 무역의 폐해와 영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 건국 후 여진인들은 조선에 來朝하여 모피류 등 자신들의 토산품을 가져와서 헌납하고, 그 대가로 조선으로부터 생필품 등의 回賜품을 받았다. 또한 내조할 때 각 고을의 驛과 서울의 館에서 자신들의 토산품과 조선의 鐵物 등을 교환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진인들과 철물 매매를 금지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의 철물과 교환될 만큼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가진 물품은 모피 중에서는 貂皮였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초피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명나라와 여진 사이에서는 초피 무역이 성행하였다. 조선에서도 초피가 유행하여, 조선 중기가 되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조선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초피를 貢納으로 지정했지만, 초피의 질이 좋지 않았고 생산량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질 좋은 초피는 대부분 만주 지역의 여진인들에게서 수입하였다. 그리고 초피의 유행은 사적 무역의 성행으로 이어졌다.

* 이 논문은 만주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 ‘만주와 한반도’(2018.05.19)에서 발표한 ‘조선과 여진과의 貂皮 교역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사학과.

조선의 백성들은 공납을 위해, 상인들은 이익을 위해 禁法을 어기고, 철물과 牛馬로 여진인들에게서 초피를 교환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초피 공물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초피 무역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적 무역의 성행을 제어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北道에는 상인들이 구름처럼 모인다고 할 정도였으며, 연산군 및 중종 시기가 되면 초피 무역은 더욱 성행하였다.

초피 무역의 성행에는 禁物을 단속해야 하는 수령들도 일조하고 있었다. 수령과 邊將들은 중앙의 조정 대신들과 결탁되어 있었고, 전면에 나서 여진과의 초피 무역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북방의 수령들은 마음대로 關市를 여는 등 초피 매매에 경쟁하듯 뛰어들었다.

초피 교역으로 여진인들에게 조선의 철물이 유출되자, 여진인들이 鐵箭과 鐵甲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의 철 유출로 여진인들의 군사 무기가 발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철물과 우마 유출은 조선의 경제적·군사적 상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초피 무역 때문에 백성들은 말을 가지고 말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사람이 소가 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할 정도였다. 따라서 여진인들은 더 강성해지고 조선인들은 날로 피폐해진다는 평가나 나오게 되었다. 더구나 함경도 지역에서는 말을 탄 군사가 줄고 있었고, 초피 공납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의 유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군사의 수효 역시 감소하고 있었다.

원래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은 조선에 정치·경제적으로 복속되어 藩籬·藩胡 등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초피 교역으로 점차 조선인과 여진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역전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인들이 여진 지역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 더구나 변장들이 여진인들의 초피를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抑買하면서 여진인들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결국 변호들이 조선을 침입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변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광범위한 여진인들의 이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주제어 : 조선, 여진, 초피, 교역, 성행, 영향

I. 머리말

전근대 만주 지역에는 세 가지 보물(滿洲三寶)이 있었다고 한다.¹⁾ 그것은

1) 김선민, 2016, 『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 『명청사연구』 46, 288쪽.

人蔘(山蔘), 東珠(珍珠), 貂皮(담비 가죽)였다. 담비는 그 종류가 많은데, 담비 중에서도 최고급 모피로 평가받는 것은 純黑貂皮, 즉 검은담비 가죽이다. ‘검은담비(黑貂)’는 한반도, 홋카이도, 캄차카 반도, 만주, 시베리아의 침엽수림과 몽골에 서식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검은담비 가죽은 모피 중에서도 최고가의 가격을 가진 사치품으로, 조선시대에는 정3품 이상만이 초피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과 명 모두 초피가 유행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초피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초피의 공급과 수요 역시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려 때 여진인들이 초피를 바친 기록들²⁾이 있지만, 조선시대만큼 그 수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세종이 前朝(고려) 때의 초피의 귀천에 대해 묻자, 崔濶德이 ‘전조에는 초피가 극히 귀하였다’³⁾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말에는 초피가 상당히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초피 착용에 대한 禁畵을 여러 차례 내릴 정도로 민간에서도 초피 착용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초피 산지로 인식되어 공물로 지정되었지만, 그 생산량은 적었고 질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공납과 진상을 위한 질 좋은 초피는 지금의 만주에 거주하는 여진인들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여진인들은 그 대가로 조선의 牛馬와 鐵物을 받으려고 하였다.

사실 압록강·두만강 가까이 거주하고 있던 여진인들 역시 자신들보다 먼 지역(深處)에 거주하는 여진인들로부터 초피를 가져오고 있었다. 털이 길고 조밀하며 유연하고 부드러운 흑초피는 그 주산지가 黑龍江 일대의 수목지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피를 이곳에서 무역하여 조선과 명에 중계 무역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초피들은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함경도 6

2) 『고려사』 제4권, 세가 제4 현종1 무오 9년 정월 입자; 2월 기묘;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원문대왕 무오 8년 2월.

3)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0월 19일 계유.

진 지역에서, 평안도 滿浦에서, 그리고 여진인들이 내조하여 머무르는 서울의 野人館(北平館)에서 조선인들과 매매가 이루어져 왔다.

당시 명에서도 초피 유행이 번지자,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이 純黑貂皮 30장과 良馬 1마리를 가지지 않으면 중국에 入朝하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에서도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이 조선에 상경하려면 질 좋은 초피를 바쳐야만 상경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과 여진과의 초피 무역은 내조를 바탕으로 한 공적 무역과 변경 및 야인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무역에서 시작한 초피 무역은 점차 사적 무역으로 확대되면서 15~16세기 만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치·군사적 측면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과 여진의 초피 교역과 관련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⁴⁾ 이들 연구들을 통해 당시 초피 무역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지만, 연구 성과의 절대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와 주제에 한정됨으로써 아직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선과 여진과의 초피 무역이 공적·사적 무역으로서 이루어져 왔음을 살펴보고, 초피를 둘러싼 사적 무역의 전개와 성행 양상을 파악해 보는 동시에 초피 무역의 폐해와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보완·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미진했던 조선과 여진 사이의 경제사적 연구에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4) 河内良弘, 1971, 『明代東北アジアの貂皮貿易』, 『東洋史研究』 30(1); 김순남, 2011, 『16세기 조선과 野人사이의 모피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한성주, 2014, 『조선의 對女眞關係와 6鎭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김미형, 2016, 『조선전기 貂皮 수요층의 확대와 밀무역 성행』,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성주, 2018, 『근세 한·중·일의 貂皮 무역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II. 여진의 조선 내조와 초피

『조선왕조실록』에 여진인들의 來朝 기사가 처음 나오는 것은 1392년(태조 1) 8월 15일(甲子)이다.⁵⁾ 이때 『태조실록』에는 ‘올랑합이 왔다(兀良哈來)’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올랑합의 내조 기사가 등장하는데 이때 올랑합은 方物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올랑합이 바친 방물이 어떤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들에게서 생산되는 토산품이었을 것이다.

- 兀良哈이 왔다(兀良哈來).⁶⁾
- 兀郎哈이 와서 방물을 바치었다(兀郎哈 來獻方物).⁷⁾
- 공주 이복의 吾郎改 萬戶 蒙尙과 千戶 甫里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니(來獻土物), 목면·명주·모시를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⁸⁾
- 吾郎哈 만호 波所와 천호 照乙怪·李都介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니(來獻土物), 각각 의복을 내려 주었다.⁹⁾
- 吾都里 10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으므로(來獻土物), 쌀과 베를 주어서 후하게 위무하였다.¹⁰⁾

즉 1395년(태조 4)에 온 오랑개(올랑합)의 만호 몽상과 천호 보리 등이 토물을 바쳤다는 기록을 보아서 여진인들이 바친 방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토산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조선에 방물 또는 토산품을 바치면, 조선에서는 목면·명주·모시 등의 옷감이나, 의복, 쌀 등으로 回賜해 주었다.

5)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2015, 22쪽 및 275쪽(조선시대 여진인 내조자 목록 참고).
 6)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15일 갑자.
 7)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윤12월 14일 경인.
 8)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1월 6일 신축.
 9)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1월 19일 갑인.
 10)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2월 7일 신미.

이후에도 조선의 『태조실록』에는 여진인들이 조선에 내조한 기록들과, 내조해서 방물 또는 토산품을 바쳤던 기록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그 방물이나 토산품이 어떤 구체적인 물품이었던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1402년(태종 2)이 되면 여진인들의 토산품 중에 보다 구체성 있는 물품을 발견할 수 있다.

- 兀良哈 5인이 毛皮와 箭羽를 바치고(獻毛皮箭羽), 왜인 9인도 또한 賀禮에 참여하였다.¹¹⁾
- 오도리 指揮 童猛哥帖木兒가 사자를 보내어 禮物를 바쳤다(獻禮物).¹²⁾
- 오도리 지휘 동맹가첩목아가 사람을 보내어 熊皮와 鹿皮 각 1장씩을 바쳤다(獻熊鹿皮各一張).¹³⁾

즉 올랑합 5인이 와서 毛皮와 화살깃(箭羽)을 바친 것이다. 이를 보면, 앞선 태조 시기보다 여진인들이 조선에 가져온 물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여진인들이 내조를 하였다거나, 내조하면서 土物을 바쳤다는 기록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2년(태종 2)의 기록을 통해 모피가 여진인들의 토산품이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태종 시기가 되면 명과 조선의 관계가 안정화되고, 명과 여진,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 정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여진이 조선에 보낸 물품에 ‘禮物’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한다. 그리고 토산물을 뜻하는 ‘土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여진인들의 모피 종류도 처음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 기록된 모피 종류는 곰 가죽(熊皮)과 사슴 가죽(鹿皮)이었다. 이에 더해 『태종실록』에서는 여진인들이 바친 물품으로 말(馬)과 매(鷹)가 확인된다.¹⁴⁾

세종 때 역시 여진인들에 대한 내조 기사 또는 내조했을 때 토산과 방물을 바쳤던 기록이 계속된다. 그러다가 1424년(세종 6) 兀狄哈이 내조하면서

11)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1월 1일 갑신.

12)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12월 29일 신유.

13)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1월 1일 임술.

14)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2월 15일 신축; 권28,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조선에 皮物을 바쳤다고 한다.

- 兀狄哈 지휘 時里應哈과 關兒干兀狄哈 지휘 同哈等 등 8명이 와서 皮物을 바치니(來獻皮物), 의복과 갓·가죽신을 하사하고, 면포를 차등이 있게 回賜하였다.¹⁵⁾
- 韓朶里 지휘 李張家 등 7명이 와서 土宜로 皮장과 말을 바치니(來獻土宜, 皮張馬匹), 의복과 갓·가죽신을 하사하고, 면포를 차등이 있게 회사하였다.¹⁶⁾

이어서 알타리(오도리) 등이 내조하여 토의(토산품)을 바쳤는데, 그 토산품은 皮張(피물)과 말(馬)이었다. 결국 여진인들의 방물·토물·토의 중에는 모피·피물·피장이라 불리는 짐승의 가죽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433년(세종 15)에 兵曹은 여진과의 무역에 대한 禁法을 재차 엄하게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세종의 윤허를 받았다. 그 내용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여진인들과 鐵物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鐵器·農器·兵器 등 철물을 매매하는 자에 대한 금법을 엄하게 할 것과 아울러 여진인들이 내왕하는 각 고을의 驛과 서울 안의 館 안에서도 법을 정하도록 한 것이었다.¹⁷⁾

이것은 조선과 여진과의 무역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준다. 한 가지는 앞서 살펴보았듯 여진인이 내조를 통해 모피류 등 자신들의 토산품을 가져와서 헌납하고, 그 대가로 조선으로부터 생필품 등의 회사품을 받았던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변경에서, 그리고 내조시 각 고을의 역과 서울의 觀(野人館, 北平館)¹⁸⁾에서 자신들의 토산품과 조선의 철물 등을 교환한 것이다.

모피·피물은 당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진인들의 토산품 중 하나였는

15)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2월 26일 정묘.

16)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2월 27일 무진.

17)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3월 22일 을해.

18) 조선시대 서울에서 여진인들을 접대하기 위한 客館을 野人館이라 불렀는데, 1438년(세종 20)에는 北平館으로 고쳤다. 북평관은 동대문 근처에 위치하였는데, 현재의 종로6가 107번지 일대로 전 이대부속병원 맞은편 지역이다.

데, 사실 모피류는 그 종류가 많고, 조선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만주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많은 모피가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조선의 각 고을의 역과 서울의 야인관(북평관)에서 조선의 철물과 교환될 만큼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가지려면 모피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상품이 그러 역할을 주도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그 특수한·대표적 상품은 모피 중에서도 바로貂皮였다고 생각한다. 초피는 虎皮·熊皮·豹皮보다 개체수가 많고, 보존성이 높으며, 여러 가지 衣裳類를 만드는데 편리함을 가지고 있었다.

1429년(세종 11) 明의 사신 崔眞은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조선을 거쳐 두만강 유역에 다녀와서는 조선으로 하여금 여진들에게 옷과 식량을 주라고 청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여진인들로부터 초피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었다.¹⁹⁾ 즉 최진이 여진 지역에서 받아들인 초피가 당시 여진인들의 대표적인 모피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明 사신들은 이미 조선에서 초피를 중심으로 한 모피류의 증여와 매매를 청구하고 있었다. 1417년(태종 17)에 온 黃儼에게는 초피 총 3백 령(장)이 증여되었고,²⁰⁾ 그 외에도 초피 코트라고 할 수 있는 초피 잣옷(貂裘)이 명 사신들에게 예물로써 전해졌다. 1418년(세종 1)에는 명 황제에게 초피와 鼠皮 4백 령이 별도로 조공되기도 하였고,²¹⁾ 1425년(세종 7)에 온 尹鳳과 朴實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비단 등과 조선의 모피류를 무역하였는데, 그들이 무역한 모피가 초피 665령, 靑鼠皮 3,640령, 狐皮 225령이었다.²²⁾

명 사신들이 조선에게 초피 선물을 요구하고, 무역까지 나선 것은 당시 명에서 초피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즉 명나라에서는 초피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명과 만주 지역의 여진 사이에 초피 무역이 성행하였는데, 그것은 명 국내에서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었다.²³⁾ 그리고 심지어 명에서는

19)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2월 17일 병인.

20)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7월 14일 정묘; 30일 계묘.

21)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25일 정유.

22) 『세종실록』 권27, 세종 7년 2월 22일 임술.

1466년(明 憲宗 成化 2, 조선 세조 6) 여진인들이 내조할 때 방물로 純黑貂皮와 말(馬)이 크고 살찐 것을 바치지 않으면 入貢을 막기 시작하였다.²⁴⁾ 여진인들은 良馬 1필과 黑貂皮 30장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명에 입조할 수 없었다.²⁵⁾

조선에서도 초피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국초부터 초피에 관한 복식 제한 규정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초피는 희귀해서 신분의 귀천에 따라 그 착용 대상을 달리하였다. 조선은 태조 때부터 일반 서민들은 초피를 쓰지 못하게 하였고, 세종 때에는 3품 이상이 되어야만 초피를 쓸 수 있었다.²⁶⁾ 세종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초피 사용을 엄금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초피의 유행을 막을 수 없었던 것에 있었다. 조선 중기가 되면 초피 유행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졌던 것이다.

한편 초피는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도 생산되었기 때문에 貢納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즉 세종 때 평안도에 초피 7백 벌, 함길도에 초피 1,365 벌을 공납으로 정했던 것이다.²⁷⁾ 그러나 이 수량은 평안도·함길도의 초피 생산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피 공물 수량을 감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바치는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²⁸⁾

더구나 평안도·함경도에서 생산되는 초피는 그 질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성종실록』에는 공납되는 초피와 서피의 상태가 모두 나쁜 지경이라고 되어 있고,²⁹⁾ 『중종실록』에는 평안도에서 생산되는 초피가 진상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함길도 지역의 초피 역시 빛깔이 누렇게 털이 두껍거나 얇아 진상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되어 있었다.³⁰⁾ 특히 甲山 지역은 초피 150장, 서피 249장, 三水 지역은 초피 110장, 서피 249장이 매년 分定되어 있었지

23) 河內良弘, 1971, 앞의 논문, 62~67쪽.

24) 『憲宗純皇帝實錄』 卷35, 成化 2年 10月 16日.

25) 『세조실록』 권40, 세조 12년 11월 3일 신미.

26)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6월 26일 갑오;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1월 25일 무진.

27)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8월 27일 계사.

28)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0월 9일 갑술; 권32, 세종 8년 4월 28일 신묘; 권58, 세종 14년 10월 16일 신축.

29) 『성종실록』 권16, 성종 3년 3월 27일 계해.

30) 『중종실록』 권86, 중종 32년 12월 19일 갑자; 권87, 중종 33년 5월 16일 무자.

만, 토산은 모피가 얇아 봉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초피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땅에서 나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였다.³¹⁾

명에서 여진인들의 입조 조건으로 純黑貂皮를 제시했던 것처럼, 최상품의 초피는 바로 털이 검고 윤기가 흐르는 흑초피였는데,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초피가 희귀하였다. 초피의 주산지는 黑龍江 이북의 시베리아 산림 지대, 黑龍江省 북부의 정글 지대였다.³²⁾ 따라서 조선과 명은 대부분의 초피를 지금의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에 의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 여진과의 초피 무역은 앞서 언급한 공적 무역과 사적 무역의 방식이 준용되고 있었고, 초피의 유행과 수요 증가라는 상황에서 사적 무역의 금지는 잘 이루어질 수 없었다. 오히려 초피의 유행은 사적 무역의 성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Ⅲ. 사적 무역의 전개와 성행

세종 때 평안도에는 이미 興販者라고 불리는 초피나 인삼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³³⁾ 이들은 초피나 인삼을 조선인이나 여진인들로부터 사들였던 사람들이었다.

또 여진인들이 조선에 왕래하면서 皮物 등의 물건을 邊將에게 증여하였는데, 세종은 이를 私交라고 논할 수 없다며 피물을 받은 변장들은 면포·염장·미면 등으로 回奉하도록 하고 이를 곧 알리게 하였다.³⁴⁾ 여진인들은 변장을 알현하러 와서 피물과 초피를 바치기도 하고 조선의 소식을 듣거나 상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³⁵⁾ 변장들이 여진인들로부터 피물을 받고 그 대

31) 『중종실록』 권94, 중종 35년 11월 3일 경인.

32) 河內良弘, 앞의 논문, 1971, 107쪽.

33)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0월 26일 을해.

34)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가를 회봉한 다음 이를 조정에 알리면 공적 무역이 되겠지만, 변장들이 이익을 취해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적 무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영안북도 절도사를 지낸 宣炯은 여진인들의 초피와 마필을 받았다고 비판 받았는데³⁶⁾, 변장들이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 많은 초피를 받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여 피물을 받고도 조정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진인들이 내조하여 서울에 오면 이들의 접대를 감독하던 監護官이나 서울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女眞通事 역시 초피 무역에 나섰다. 즉 감호관 朴去頑은 여진인에게 초피의 값을 시세보다 줄여서 주었고³⁷⁾ 여진 통사 李英達은 여진인들에게 자기의 공을 내세우며 피물을 받아 문제가 되었다.³⁸⁾

그런데 이미 세종 때 여진인들과의 무역에서 철물을 매매하는 자에 대한 금법을 실시한 적이 있었고, 『경국대전』에도 關細布·彩紋席·厚紙·초피·토포피·海獺皮의 금지 물품을 몰래 판 자는 장형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하며, 鐵物·牛馬·金銀·珠玉·軍器를 판 자는 죄가 엄중하므로 絞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다.³⁹⁾ 그렇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공납을 위해, 상인들은 이익을 위해 이러한 금령을 어기고 철물과 우마로 여진인들의 초피를 교환하고 있었다.

- 근자에 변방 고을 守令들이 태만하게 법을 받들지 않아서, 毛物을 매매하면서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서 오직 鐵物만을 팝니다 ... 野人이 국경 위에 와서 서로 장사하는 자는 반드시 牝牛와 牝馬을 구하는데, 邊民과 수령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교환이 편한 때문으로, 얻는 것은 毛皮와 牝馬에 불과할 뿐입니다.⁴⁰⁾
- 6진에서 바치는 貂皮와 鼠皮는 거의 다 저 사람들에게서 무역하는 것

35)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 5월 10일 정사; 『성종실록』 권11, 성종 2년 9월 11일 경진.

36) 『성종실록』 권21, 성종 3년 8월 25일 기축.

37)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1월 18일 무진.

38) 『세조실록』 권12, 세조 4년 5월 17일 계묘.

39) 『經國大典』 刑典 禁制.

40) 『성종실록』 권48,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이기 때문에 소나 말이나 쇠로써 이를 바꾼다(六鎮所貢貂鼠皮, 率皆質于彼人, 故以牛馬鐵易之)⁴¹⁾

- 초피가 비록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지만 야인에게서 얻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혹은 소와 말로, 혹은 철물로 저들에게서 사기를 구하여 이르지 않는데가 없습니다.⁴²⁾
- 興利人이 초피와 서피를 무역하고 있어 북방의 큰 폐단이다 ... 초피의 값이 오르자 謀利者들이 北道에 雲集하여 사기를 구하여 그치지 않아 牛馬와 鐵物로써 이를 사기까지 하였다.⁴³⁾

즉 모물(초피)과 철물의 매매를 금하는 법이 있었지만, 변방의 수령들이 법을 받들지 않아서, 조선인들이 모물을 매매하면 반드시 여진인들에게 철물을 팔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철물은 여진인들이 원하는 물품이어서, 여진인들 중에 조선의 국경 땅에 와서 서로 장사하는 자는 반드시 암소와 암말을 구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얻는 것은 毛皮와 숫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함경도 6진 지역에서 공급하는 초피와 서피는 거의 대부분 여진인에게 무역하고 있었으며, 조선에서는 소와 말, 철물로 이를 교환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즉 興利人들이 초피와 서피를 무역하고 있어 북방의 큰 폐단이라 할 정도였으며, 초피가 유행하여 값이 오르자 부정한 이익을 꾀하는 謀利者들이 北道에 구름처럼 모여서 우마와 철물로써 초피 사기를 구하여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변경에서는 이러한 흥리인들과 통역을 하던 통사의 무리(通事輩)들도 초피 무역에 나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⁴⁴⁾

결국 성종이 사치를 금하는 전지를 내리면서 ‘초피와 서피 때문에 장사치(商賈)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익을 도모하고, 수령과 鎭將들도 백성에게서

41)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24일 을사.

42) 『성종실록』 권55,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43) 『성종실록』 권57,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44) 『성종실록』 권57,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취하며, 심한 경우는 여진들과 더불어 서로 물건을 팔고 사기까지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양계(평안도·함경도)가 시끄럽다'고 할 정도였다.⁴⁵⁾

그러나 여진과의 초피 무역은 금지시킨다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초피가 함경도의 공납으로 정해져서 貢案에 기록된 이상,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두만강 유역의 백성들은 받기는 소(耕牛)나 농기구, 가마솥을 팔아 야인과의 무역을 통해 초피를 구하여 그 구실을 채웠으며, 이는 국가에서 초피 공물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금지시킨다고 해도 제어할 수 없었다.⁴⁶⁾

그렇기 때문에 성종은 초피가 본래 두만강 유역의 5진에서 생산되지 않는데 공안에 기록되어서 5진의 백성들이 부득이 우마와 농기구를 가지고 몰래 야인과 바꾼다는 말을 듣고는 초피를 바치는 공납을 면제할 수 있는지 영안도(함경도) 관찰사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⁴⁷⁾ 이에 당시 영안도 관찰사는 內地(조선 땅)에도 비록 초피가 나긴 하지만 進上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서 반드시 야인들과 무역하고 있으며, 야인들은 우마나 농기구가 아니면 바꾸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었다.⁴⁸⁾

따라서 공안의 변경을 검토하자는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선왕조에서 참작하여 풀라 정한 것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⁴⁹⁾는 이유에서 공안 개정은 번번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선에서는 초피 공납을 감해주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분정하기도 하고, 여진과의 피물 교역을 금지하도록 하였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지금 6진의 공곤함이 지난날보다 심한 것은 다름 아니라 邊將이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이오니 … 차분하고 진실한 사람은 적고 각박하고 탐욕한 무리가 많아서 방어를 예사로 알 뿐더러, 백성의 힘을 걱정하지 않고 백방으

45) 『성종실록』 권57,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46) 『성종실록』 권225, 성종 20년 2월 22일 경술.

47) 『성종실록』 권225, 성종 20년 2월 28일 병진.

48) 『성종실록』 권228, 성종 20년 5월 30일 정해.

49) 『성종실록』 권263,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로 거두며 저쪽 놈들을 사귀고 꼬여서 皮物을 구하므로 백성은 안에서 궁하고 오랑캐는 밖에서 엿보니 邊鎮의 해가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 또 野人 등이 우리나라의 牛馬와 鐵物을 이롭게 여겨 항상 貂皮나 鼠皮를 준비하여 매매하기를 구하는데, 변민들이 또한 侵漁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農器와 가마솥을 가지고 오랑캐와 교역을 합니다. 또 서울 안에서 興販하는 무리들이 바리바리 면포를 신고 변방 鎮을 두루 횡행하며 철물과 牛隻을 사가지고 通事와 결탁하여 날마다 팔아넘기기를 일삼으니, 비록 어진 守畝이라도 역시 능히 금지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⁵⁰⁾

1498년(연산군 4) 함경도 관찰사 呂自新은 6진의 피폐한 상황을 말하면서, 탐학한 변장들이 백성들을 가림주구하고 있고, 백방으로 여진인들을 사귀고 꼬여서 피물을 구하고 있어 변진의 해가 이보다 클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초피와 서피의 매매 때문에 여진인들에게 우마와 철물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서울에서부터 장사치(興販)들이 면포를 신고 변방의 진을 횡행하며 철물과 소를 사서 통사와 결탁하여 여진인들에 팔아넘기는 상황을 어진 수령이라도 능히 금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여자신은 중국의 山海關처럼 關門을 설치하고 강개하고 명망이 있는 자를 御史로 파견하여 사찰을 엄하게 하고, 行裝과 馬文·關帖을 고찰, 이름을 점호하고 출입하게 하여 興販하는 사람이 邊鎮을 어지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청하였다.⁵¹⁾

李克均은 여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여, 당시에 도모하는 무리들(興利之徒)이 物貨를 많이 싸가지고 北鎮을 두루 다니면서 철물과 우마를 사들여서 오랑캐들의 皮物을 바꾸어 오고 있으니 수시로 어사를 뽑아 보내서 사찰을 강화하도록 청하였고, 연산군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⁵²⁾

그러나 연산군 때는 폭정과 사치 풍조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연산군은 초피 등을 상으로 하사하는 것에 있어 절도가 없었고, 宮人들이 다투어 사

50) 『연산군일기』 권29, 연산군 4년 4월 17일 계미.

51) 『연산군일기』 권29, 연산군 4년 4월 17일 계미.

52) 『연산군일기』 권29, 연산군 4년 4월 21일 병술.

치를 서로 숭상하여 초피로 치마를 만드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⁵³⁾ 이에 당시(1502년, 연산군 8)에 초피 값이 매우 뛰어들라 초피 1령의 값이 면포 10 필에 이를 정도였다. 또한 여진인들이 진상한 초피 56장을 尙衣院에 내려 보내게 하였고, 서울에 있는 북평관 아인들의 초피를 남김없이 가져다 골라 쓰도록 하였다.⁵⁴⁾

이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시중에 있는 초피의 품질이 조잡하다며 양계(평안도·함경도)에 상의원 관원 두 사람을 보내 초피 2만 령을 사오게 하였는데, 이때 여진인들이 소를 귀중하게 여기므로 兩道의 소를 모두 초피 사는데 써버렸다고 한다.⁵⁵⁾ 연산군은 마침내 별도의 局을 만들어 국가에서 쓸 피물을 간직하게 하고 관원을 두어 출납을 전담시키기까지 하였다.⁵⁶⁾

따라서 중종 반정 후에는 ‘폐왕조에서 피물 무역하는 일로 북도의 백성이 폐해를 입음이 너무 심하여, 가졌던 소와 말을 모두 성 아래 여진인들에게 팔아버렸다’, ‘북도는 폐조의 피물 무역으로 곤핍과 피폐가 더욱 심하여 백성이 흩어지고 안정되지 못했다’, ‘함경 일도는 피물 무역 등의 일로 침탈하고 독촉하며 뜯어내어 민생이 극도로 곤궁’, ‘폐조 때 북도가 피물 무역 때문에 피폐한 상황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백성이 소 1마리를 가지고 초피 1장을 바꾸게 되어 소와 말이 거의 다 없어졌다’, ‘폐조에서 초피 따위 물건을 변방의 백성에게 많이 분정했는데 변방의 백성들이 얻을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를 가지고 여진인들에게 사왔다’, ‘폐조 때는 피물을 반드시 야인들에게서 구했다’는 평가가 계속되었다.⁵⁷⁾

그렇지만 중종 시기, 여러 차례 초피와 우마·철물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진과의 초피 무역은 더 성행하게 되었고 할 수 있다. 평안도의 변방 백성들(邊民)들은 農牛와 農器를 가지고 여진

53) 『연산군일기』 권46, 연산군 8년 10월 8일 정미.

54) 『연산군일기』 권42, 연산군 8년 1월 26일 기해; 권51, 연산 9년 12월 16일 기유.

55) 『연산군일기』 권60, 연산군 11년 10월 3일 갑인.

56) 『연산군일기』 권62, 연산군 12년 4월 22일 신미.

57)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28일 갑진; 권3, 중종 2년 7월 11일 임자; 13일 갑인; 권5, 중종 3년 2월 23일 신묘; 권6 중종 3년 8월 16일 신사.

인들이 오는 滿浦로 가서 모물을 무역하되 기탄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고 있으며,⁵⁸⁾ 평안도의 우마와 철물이 마침내 모두 여진인들의 밑천이 되고 말 것이라며 만포에서 서로 매매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⁵⁹⁾

그리고 장사꾼들(興販之徒)도 오래 변방에 머무르며 변방의 곡식을 소모하고 군사들의 牛馬를 사서 여진인들에게 넘겨주고 모물을 교역하는데 이러한 폐단을 금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⁶⁰⁾ 이에 재차 禁物을 潛賣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적발 단속하지 않는 兵使·鎭將도 중죄로 논하게 하며, 摩天嶺 위에 관문을 설치하고 兼御史를 파견하는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실제 초피와 철물 매매로 인해 상인들이 5진 깊숙이까지 들어가 금물을 여진인들에게 많이 넘기고 있는 실정이었다.⁶¹⁾

그런데 초피 무역의 성행에는 장사치들과 변민들뿐만 아니라 금물을 단속해야 할 변방의 수령들이 일조하고 있었다. 어쩌면 장사치들과 변민들은 통사·아진·수령·鎭將·兵使·관찰사 등과 결탁되어 있었을 것이고, 다시 지방의 수령들은 서울에 있는 조정의 대신들과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구조적인 상납 또는 뇌물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이 전면에 나서 여진과의 초피 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성종 때 영안북도(함경북도) 절도사였던 元仲桓는 여진들의 良馬·綵段·초피·진주 등의 물품을 매매하여 原州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실어 날랐는데, 짐을 신고 온 말이 살아서 돌아간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⁶²⁾ 또한 함경도 병사로 있었던 黃衡은 초피를 많이 무역해 와서 이것을 팔아 이득을 취하였고,⁶³⁾ 滿浦僉使였던 奎五倫은

58) 『중종실록』 권6, 중종 3년 8월 21일 병술.

59)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9월 24일 정축.

60)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윤5월 28일 신축.

61)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6월 1일 신해.

62) 『성종실록』 권228, 성종 20년 5월 28일 을유.

63)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2월 26일 정미.

소와 철물로 초피를 사서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⁶⁴⁾

결국 중종 때 尹殷輔는 여진인들에게 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염치없는 변장이 國憲을 받들지 않고 여진인들과 서로 피물을 교역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⁶⁵⁾ 그리고 변장들의 초피 교역은 관찰사가 수시로 巡歷하여 검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李長坤 역시 평안도 만포진에서 建州三衛 여진인을 館에서 접대하면서 변장이 마음대로 關市를 열어서 조선인들이 우마와 鐵器를 가지고 끊임없이 많이 모여들어 무역함으로써 그 해를 끼치는 것이 한이 없다며 만포에서의 무역을 엄격히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⁶⁶⁾ 또한 함경도에 敬差官으로 파견되었던 朴世燾도 여진인들이 鐵物을 귀하게 여기므로 변장들이 대개 철물으로써 초피와 서피를 구입하여 밭 매는 호미나 화살촉까지 써먹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⁶⁷⁾

1516년(중종 11) 掌令 金希壽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수령들이 철물로 피물을 사서 宰相이나 벗들이 청하는 것을 채우거나 사리를 피하고 있다고 하였다.⁶⁸⁾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함경북도 評事였던 柳沃의 상소 내용에 보다 자세히 나타난다.

매양 鎭邑에 제수되는 사람이 있으면 올 때에는 부탁이 모여들고 이미 부임하면 簡牘이 모여드는데, 한번이라도 얻지 못하게 되면 책망이 따릅니다. 그래서 鎭將이 된 자는 사사로 취할 뿐 아니라 徵索하기에 괴로우나, 마지못해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여 혹 鹽粟이나 牛馬·鐵物로 날마다 매매를 일삼되 뒤질까 염려하며, 서로 장사하도록 허가하여 그 稅를 거두는 자까지 있습니다. 변방 백성의 힘을 다하여 국가가 금하는 물건을 날라다가 야인을 대어 주되 그칠 줄 모르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⁶⁹⁾

64) 『중종실록』 권23, 중종 11년 1월 3일 을유.

65)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66)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4월 1일 갑오.

67) 『중종실록』 권27, 중종 12년 3월 8일 계미.

68)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6월 1일 신해.

69)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9월 22일 을미.

유옥은 진과 읍에 수령이 제수되어 파견되어 올 때면 초피를 구해달라는 부탁이 모여들고, 부임하면 초피를 부탁하는 편지(簡牘)들이 모여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초피를 얻지 못하면 책망이 뒤따라서 진장이 된 자는 사사로이 초피를 취하거나 징색하고,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며, 소금·곡식이나 우마·철물로 날마다 초피 매매를 경쟁하듯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진인과 조선인이 서로 장사하도록 허가하여 세를 거두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사실상 조선 중기 여진과의 초피 무역을 주도하거나 방조·묵인한 사람들은 초피·우마·철물 무역을 금지해야 할 조선의 수령·진장·변장들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변장 등은 중앙의 재상들과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초피 무역에 관여했던 수령과 변장들에 대한 탄핵은 계속 이어졌다. 江界府使였던 柳壩은 모물을 무역하여 고을을 피폐하게 하였다며 간원의 탄핵을 받았고,⁷⁰⁾ 潼關僉使 都瑞麟은 모물을 사들일 때 싼 값으로 마구 거두어들여 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였다.⁷¹⁾ 도서린이 여진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李繼孟은 근래에 변장들이 생계를 경영하고 이익을 추구하느라 모물을 징수하고 탐오하다는 기롱을 초래하여 변방의 사단을 조성하였다고 비판하였다.⁷²⁾

변방의 장수였던 李元濬 역시 여진인들과 피물을 무역하다가 여진인들로부터 고소당하였으며,⁷³⁾ 惠山僉使였던 金克達도 管下 사람들과 뇌동하여 官物로 소를 사서 야인들과 교통하고 은밀히 초피 등의 물건 등을 산 것이 발각되어 형신을 받았는데, 당시 연루된 사람들이 惠山鎮의 事干·通事·土兵·軍官들이었다.⁷⁴⁾

또한 會寧府使였던 趙賢範은 국가의 양곡이 남고 모자라는 것을 계산하

70) 『중종실록』 권31, 중종 12년 12월 6일 정미.

71)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4월 13일 기축.

72)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4월 13일 기축.

73) 『중종실록』 권89, 중종 34년 2월 3일 임인.

74)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8월 22일 을유; 26일 기축; 권67, 중종 25년 2월 8일 무진; 권68, 중종 25년 5월 16일 을사; 중종 25년 7월 24일 신해.

지 않고 모조리 여진인들의 피물과 바꾸어 金安老를 섬겼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김안로는 초피 방식을 쌓아 놓았다는 소문이 퍼졌었다.⁷⁵⁾ 李亨順 역시 함경도의 변장으로 있으면서 군졸을 침탈하고 오랑캐 땅(胡地)에서 매매를 하여 조현범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⁷⁶⁾

명종 때 李瓘은 李樛의 무리를 아첨해 섬겼는데, 鍾城府使였을 때 소 등의 가축을 사다가 胡馬나 초피 등의 물자를 되사서 이양에게 바쳐 關西의 방백이 되었다고 비판받기도 하였다.⁷⁷⁾ 선조 때 北評事였던 尹尙도 여진인들과 사사로이 매매하면서 모피 등 물품을 가득 싣고 돌아왔으므로 북방인들이 그를 도둑놈으로 매도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⁷⁸⁾

한편 서북도(평안도)의 변방 수령들 역시 여진인들과 초피를 매매하면서 억지로 매매(抑買)하여 여진인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변방에 사단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려되었다.⁷⁹⁾ 두만강 유역 6진에 거주하던 城底野人들도 매양 서울에 올라갈 때 으레 초피를 바치는 것이 상례였는데, 변장들은 초피가 없으면 비록 공로가 있어 서울에 올라갈 차례가 된 사람이라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⁸⁰⁾ 또한 美錢僉使 姜渭, 訓戎僉使 金璃, 黃拓坡權管 楊泓은 진상을 빙자하여 여진인들로부터 초피를 과다하게 징수하였기 때문에 체포되어 파면되기도 하였다.⁸¹⁾

심지어 柔遠僉使 尹轅은 여진인과 피물 가격 때문에 다투기도 하였는데, 당시 변장들이 탐오가 유행되어 여진인들에게 모물을 토색질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기도 하고, 여진인들이 초피를 本鎭에 보고하면 황색을 흑색으로

75) 『중종실록』 권86, 중종 33년 1월 5일 경진.

76) 『중종실록』 권87, 중종 33년 6월 30일 신미.

77)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5월 21일 무술.

78)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17일 경인.

79) 『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 7월 17일 병술. 이러한 지적은 명종 때에는 제기되고 있었다. 1557년(명종 12) 李浚慶 역시 여진인들의 초피 등과 같은 물건을 억지로 사고자 하다가 여진인들로 하여금 혹 원망하고 배반할 마음이 생기게 하면 근심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 9월 18일 무진).

80)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13일 임인.

81) 『중종실록』 권72, 중종 26년 12월 12일 신묘.

바꾸기도 하고 수를 감하여 봉진하기 때문에 여진인들이 올라와도 값을 받는 일이 매우 적어 억울하게 여기기도 하였다.⁸²⁾ 또한 변장들은 여진인들이 公事로 인해 상경할 때에 印價라는 핑계로 獬皮(초피)를 함부로 징수하고 있었다.⁸³⁾

결국 중종은 여진인들로부터 초피를 변장이 받아들이면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문관을 差使員에 임명하여 여진인들이 바치는 피물의 좋고 나쁨과 많고 적음을 여진인들이 납부한 대로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봉진하게 하여 초피 가격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전교하였다.⁸⁴⁾ 또한 중종은 만호와 첨사 등이 모물을 무역하는 일로 군사들을 침략하는 일이 있으면 적발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있었다.⁸⁵⁾

1540년(중종 35) 함경도 절도사 閔齊仁은 야인과의 교역에 관한 폐단이 초피와 서피에서 모두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점차 사적인 이익을 멋대로 추구하였지만 지금은 국법을 엄히 밝혀 진처럼 무역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적이 있었다.⁸⁶⁾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여전히 여진과의 초피 무역은 계속되었으며, 초피 무역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IV. 초피 무역의 폐해와 영향

초피 교역으로 여진인들에게 조선의 철물이 유출되자, 조선에서는 骨鏃(뼈 화살촉)을 사용하던 여진인들이 鐵箭을 사용하게 되고 쇠로 갑옷을 만들게 되었다는 평가와 우려가 나타난다.⁸⁷⁾ 즉 여진인들의 땅에는 본래 철이 없어서 뼈로 화살촉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진인들의 화살은 鐵鏃이 반이

82)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10월 24일 갑자.

83) 『명종실록』 권6, 명종 2년 8월 30일 무신.

84)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10월 24일 갑자.

85) 『중종실록』 권92, 중종 34년 11월 10일 계묘.

86) 『중종실록』 권94, 중종 35년 11월 3일 경인.

87) 『성종실록』 권48,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나 되었다며, 그 원인으로 6진에서 공물로 바치는 초피와 서피를 우마와 쇠로 바꾸어 여진인들에게서 산 것에서 찾고 있었다.⁸⁸⁾ 물론 여진인들의 땅에서도 철이 생산되므로 전혀 철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⁸⁹⁾ 초피 교역에 따른 철의 유출로 여진인들의 무기가 철제화 되는 것에 조선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1475년(성종 6)李克培 역시 5진에서 초피 바치는 것을 없애자고 하면서 ‘옛날에 야인들은 나무를 구부려서 등자[鎧]를 만들고 사슴뿔을 깎아서 화살촉[鏃]을 만들었는데, 이제 등자와 화살촉을 모두 쇠로 쓴다’고 지적하였다.⁹⁰⁾ 그리고 그 이유는 5진의 수령들이 초피를 채취하여 바치게 하고, 진상이라 칭탁하며 백성들을 誅求하기 때문에 여진인들의 땅에서 나는 초피를 얻기 위해 농기구와 농우로 바꾸기 때문이며, 이것은 결국 敵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결국 성종은 직접 ‘여진인들의 화살촉은 옛날에 모두 뼈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철로 만드니, 이는 진실로 우리나라 사람이 철물을 가지고 초피를 교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초피와 철물 교역을 금단하는 사목을 승정원에서 의논하도록 하였다.⁹¹⁾

1516년(중종 11)에도 李長坤이 ‘우마나 철물 같은 것을 여진인들에 파는 자가 매우 많은데도 금지하지 못하니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胡人は 사슴뿔(鹿角)로 화살촉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 철축이고 갑옷도 철로 쓰니 모물 무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²⁾

한편 우마와 철물 유출은 조선의 경제적·군사적 상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이 초피 2만 령을 사오도록 하자, 평안도와 함경도의 소를 모두 초피 사는데 써버려서 백성들은 말을 가지고 받을

88)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24일 을사.

89)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24일 을사.

90) 『성종실록』 권52, 성종 6년 2월 2일 신사.

91) 『성종실록』 권57, 성종 6년 7월 14일 신유.

92)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5월 30일 경술.

가는 일도 있었다고 되어 있다.⁹³⁾ 명종 때도 함경도 변장들이 대부분 소를 가지고 모물을 매매하고 있어서 장사꾼들이 소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 農牛가 이미 다 없어져 논을 갈 때 사람이 소가 하는 일을 대신한다고 할 정도였다.⁹⁴⁾

또한 1506년(중종 1) 朴元宗은 ‘연산군 때 피물 무역 때문에 북도의 백성들이 가졌던 소와 말을 성저야인에게 팔아버려 폐해를 입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였고, ‘여진인들은 또 북쪽 오랑캐(北虜)와 혼인을 맺고 있어서 여진인들이 더 강성해지고 조선인들은 날로 더욱 피폐해졌다’고 지적하였다.⁹⁵⁾

실제로 1491년(성종 22) 遼山에서 사로잡혔던 達生은 성종이 여진인들의 생활과 하는 일에 대해 묻자, 여진인들이 ‘匹段과 布物을 많이 저축하여 한 사람이 가진 초피와 서피가 3백여 장에 이르렀으며, 닭이 처음 울면 비로소 일어나서 종일토록 쌀을 찼었다’고 전하였다.⁹⁶⁾ 그리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다른 종족의 울적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피물을 가지고 와서 쌀을 바꾸어 가면서 혹 2~3일 머물렀다가 2~3바리를 싣고 돌아갔다’고 자신이 본 상황을 진술하였다.

달생이 본 상황은 이미 여진인들이 비단과 포목을 많이 저축하였고, 한 사람이 3백여 장의 초피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루 종일 쌀을 찼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식량은 인근에 있는, 또는 보다 북쪽에 있는 울적함의 피물들과 교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1508년(중종 3) 洪景舟 역시 ‘연산군 때 북도가 피물 무역 때문에 피폐한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 ‘백성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초피 한 장을 바꾸게 되어 소말 말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다.⁹⁷⁾ 더구나 ‘과거에는 말 탄 군사가 1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겨우 40~50명만 있을 뿐이라

93) 『연산군일기』 권60, 연산 11년 10월 3일 갑인.

94) 『명종실록』 권29, 명종 18년 8월 7일 계축.

95)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28일 갑진.

96) 『성종실록』 권255, 성종 22년 7월 13일 정해.

97)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2월 23일 신묘.

면서, 변방의 警報가 있게 되면 장차 무엇으로 적을 방어하겠느냐'며 한탄하고 있었다.

1514년(중종 9)에도 이장곤이 ‘兵은 農에 의지하고 농은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니, 소는 진실로 兵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진인들의 초피와 조선인들의 農牛, 鐵物이 바뀌는 상황을 비판하였다.⁹⁸⁾ 그는 ‘소는 농사를 여유 있게 하는 것이요, 철물은 병기를 만들어 병력을 돕게 되는 것이니, 몇 해 뒤에는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며 三殿(王大妃殿·大殿·中宮殿) 이외에는 초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甲山府使 黃琛도 다음과 같은 書契를 올려 초피 무역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였다.

6진의 군졸은 매우 가난하고 器械도 완전하지 못하며 말을 가진 사람도 적은 편인데, 성 밑에 거주하는 야인은 날로 더욱 번성하고 부유하여 모두 戰馬를 가졌으며 많은 사람은 屯을 만들어 놓아 먹이기도 하니, 불행히 事變이 창졸간에 일어난다면 무엇으로써 이를 막겠습니까? 매년 의례적으로 서울에 오는 수효는 풍년에는 120인, 흉년에는 90인데, 모두 貂皮를 進上하게 합니다. 초피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牛馬와 鐵物을 가지고 깊은 곳에 사는 兀狄哈에게서 사오게 되는데, 만약 초피가 없으면 비록 공로가 있어 서울에 올라올 차례가 된 사람이라도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말과 초피를 비교한다면 초피는 하찮은 것이고 말은 귀중한 것인데, 야인에게는 말을 얻기는 쉬워도 초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中樞 이상의 관직에는 몇 마리의 歲馬, 都萬戶 이상의 관직에는 몇 마리의 세마라는 것을 정해놓고 암수를 논할 것 없이 초피의 값보다 減하게 하여 소원에 따라 바치도록 허가한다면, 저들은 장차 즐거이 따를 것입니다. 오랑캐의 말은 성질이 사람을 잘 따르고 또 강해서 戰場에 적합합니다. 해마다 바치게 한다면 그 수효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별도로 한 牧場을 만들고 거기에 놓아기르고 번식하게 하여,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소서.⁹⁹⁾

98)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13일 임인.

황침은 6진의 균졸이 말을 가진 사람이 적은 반면 성 밑(城底)의 여진인들은 날로 더욱 번성하고 부유하며 모두 戰馬를 가졌다면 사변이 일어나면 무엇으로 여진인들을 막겠느냐고 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여진인들의 내조 수요가 풍년에는 120인, 흉년에는 90인인데, 모두 초피를 진상하게 하고 있으나, 여진인들도 가까운 곳에서 초피가 생산되지 않아 우마와 철물을 가지고 깊은 곳(深處)의 울적합에게서 사오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피를 사오지 못한 여진인들은 조선에 대한 공로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갈 차례가 된 사람이라도 초피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진인들에게 초피보다는 말을 얻기가 더 쉬우므로, 예를 들어 조선으로부터 중추 이상, 도만호 이상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들로 하여금 歲馬 몇 마리를 초피의 값보다 감해 바치게 한다면 여진인들도 초피를 바치는 것보다 말을 바치는 것을 오히려 더 따를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황침의 언급은 변방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북방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초피 무역에 따른 폐단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당시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침의 언급처럼 초피 교역으로 조선인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고, 반대로 우마·철물을 수입하던 여진인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침내 1512년(중종 7) 두만강 이북의 東良北 위에 있던 여진인 13부락이 서로 조선에 들어와 노략질하자 함경북도 병사 尹熙平은 ‘우리나라 군민이 해마다 失農하고, 저 적들은 피물을 방매하여 우마와 포물을 여러 해 저축하고 이로 인하여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번호였던 ‘忽非哈 및 莽哈 등도 명령을 듣지 않으니 여러 종족과 부락의 여진인들의 오만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⁰⁾

즉 조선이 실농 등의 문제와 초피 교역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진인들보다 좋지 않게 되자 여진인들은 조선을 침입하거나 명령을 듣지 않고, 거만

99)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13일 임인.

100)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6월 14일 병진.

하고 오만하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조선이 두만강 유역에서 여진인들을 조선에 복속시키려는 하는 對여진 정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조선에 복속된 여진인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진과의 초피 교역은 여진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1476년(성종 7) 여진인들이 조선을 침입하여 26인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로 여진인들에게 초피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여진인들의 불만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¹⁰¹⁾

초피 교역의 또 다른 문제점은 초피를 마련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유망하거나 또는 여진 지역으로의 도망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1514년(중종 9) 訓練院都正 權勝이 서제한 것으로 6진 지역에서의 조선인과 여진인과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6진에 거주하는 백성과 성저에 거주하는 野人과는 거주가 서로 멀지 않아서 收養이라 일컫고 交通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으므로, 무릇 비밀히 약속한 것도 저들이 능히 먼저 알게 되는데 이런 습속이 이미 오래되어 실로 그 사세가 막기 어렵습니다. 또 사람을 몰래 파는 자가 있어서 의뢰할 곳이 없든가 배고픔과 추위가 몸에 사무친 사람을 보면 교묘한 말로 유혹해 가고, 나이 어려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는 끌거나 옆고 가서 몰래 팔고, 조금 큰 자는 그들의 교묘한 말을 듣고 몰래 저들의 땅에 따라가기를 마치 자식이 그 아버지의 집에 가듯이 하고, 나이는 장년이지만 게으른 자는 고생을 피하고 편안한 것을 좇아서 몰래 오랑캐의 마을로 따라갑니다.¹⁰²⁾

권승은 6진에 거주하는 백성과 성 밑에 야인들이 서로 수양이라 일컫고 교통하면서 조선의 비밀스런 정보들이 여진인들에게 유출되는 상황과 조선인들이 여진인들에게 팔려가거나 고역을 피해 스스로 여진인들의 마을로

101) 『성종실록』 권74, 성종 7년 12월 6일 을해.

102) 『중종실록』 권21, 중종 9년 10월 13일 임인.

들어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1528년(중종 23) 黃恬도 兩界(평안도·함경도)의 변방 백성은 부역이 너무 과중하므로 서로를 이끌고 유리하여 오랑캐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崔漢洪 역시 ‘조선인들이 호인들을 보면 부모와 다름이 없이 有無를 서로 의뢰하므로 우리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진인들 땅의 사람이 되겠다고 여긴다’며, ‘여진인들의 땅은 衣食이 유족하여 편히 살 수 있으므로 족속들을 데리고 점차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다.¹⁰³⁾

최한홍에 이어 李之芳 또한 ‘여진인들이 성 밑에 살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이 흉년들면 굶주림과 추위로 대개 오랑캐들 집에서 품팔이하며 아침 저녁의 공급을 오로지 胡人들에게 의뢰하고 있고 비록 사소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왔다갔다 하며 사고팔고 있다’고 하였다.¹⁰⁴⁾ 그리고 ‘이는 오로지 호인들과 사는 데가 서로 가까우며 역시 有無를 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금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양계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6진 지역은 더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李荐은 ‘모물을 서로 다투어 鬪賢(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파는 일)하여 폐단이 작지 않은데, 만일 국가에서 쓸 것을 짐작하여 감한다면 변방 백성들이 거의 회복하여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변장들이 모물을 기화로 백성들을 침해하고 독촉하기 때문에 변방 백성들이 더욱 곤궁해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흘러들어가고 있으므로 백성들을 법으로만 금단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쓸 모물을 짐작해서 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⁵⁾

한편 1540년(중종 35) 함경도 절도사 閔齊仁은 ‘갑산과 삼수 두 고을에는 사람들이 편히 살 수가 없어 날로 점점 도망해 이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모물의 진상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⁶⁾ 민제인은 당시 현존자

103) 『중종실록』 권61,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104) 『중종실록』 권61,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105) 『중종실록』 권61,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106) 『중종실록』 권94, 중종 35년 11월 3일 경인.

와 도망자 수를 고찰했는데, 갑산부와 경내의 각 진보의 주민은 현존자가 270명, 도망자가 77명, 保人은 현존자가 486명이고 도망자가 559명이고, 삼수군은 현존자가 212명, 도망자가 61명, 보인은 현존자가 238명, 도망자가 182명이라고 하였다. 또 ‘여진인과의 교역에 관한 폐단이 초피와 서피의 진상에서 모두 시작되었는데. 국법을 밝혀 전처럼 무역할 수 없게 되자 관리들이 모물을 받아낼 수 없어 모물 대신 價布로 卜定하여 모물값을 징수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때문에 백성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맨몸으로 울부짖고 있으며 재산이 없는 자는 가정을 버리고 도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土兵이 이 때문에 점점 적어지고 있으니 사변이 일어난다면 누구와 더불어 막아야 할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명종 때가 되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1550년(명종 5) 尹春年은 6진을 설치한 金宗瑞가 ‘후세에 필시 괴물로 폐단을 끼쳐 지키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면서 지금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초피와 서피를 많이 요구하는데, 수령들은 잘 섬기기에 급급하여 민간에 성화같이 독촉하고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⁰⁷⁾ 또한 그 값은 아주 적게 주고 바치는 물건을 몇 갑절로 내게 하여 백성들이 지탱하지 못하여 잇달아 유망하고 있는데, 성저의 호인들에게까지도 징수하여 여진인들도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1566년(명종 21)에 함경도 衲衣敬差官으로 파견된 鄭澈은 ‘오늘의 6진의 형편은 불에 타는 기름과 같아서 장차 다 타 없어져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스러웠다’고 한탄하였다.¹⁰⁸⁾ 그는 토병의 본래 정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경신년(1560년)에 6천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5천 명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列鎭의 장수들이 끝없는 욕심에 염치없이 오직 私利에만 급급해서 초피·서피·말을 뇌물로 바치고 출세를 하려고 도모했기 때

107)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 1월 29일 갑오.

108) 『명종실록』 권33, 명종 21년 10월 24일 신사.

문에 백성의 고혈을 짜냄에 못하는 것이 없어서 官庫의 곡식을 빼내고, 民鹽을 거두어가면서 값(價錢)이라는 명목으로 식구 수에 따라 배로 징수한 것에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말이나 초피·서피를 가진 호인들이 대체로 소로 바꾸어 가려했으므로 백성들의 소를 빼앗았기 때문에 많은 田地가 목게 되고 소도 줄어 백성들이 심히 고달프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진인들이 다니는 길이 지척에 서로 바라보이는 함경남도 역시 관방의 중요성이 함경북도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삼수·갑산이 피폐하여 토병이 줄었다면 그 이유 역시 꿀(淸蜜)과 초피·서피의 공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에서 찾고 있었다. 즉 삼수·갑산은 높고 추워서 벌을 기를 수 없고 모피는 품질이 좋지 못해, 꿀은 강원도에서 사오고 초피와 서피는 함경북도에서 사오는데 봉진하는 일이 급하면 반드시 곱질을 쥐야 하므로 이로 인해 백성들이 떠들게 되어 열 집 중 아홉 집이 비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원래 세종 때 김종서가 6진을 설치한 이후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은 조선의 울타리(藩籬)로 여겨졌고, 점차 藩胡들로 불려왔다. 조선은 그들에 대해 ‘북도의 번호는 모두 영세한 종족으로 우리나라의 성 밑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토민과 다름이 없다’는 인식을 하였고, 그 주장들을 조선의 서울인 한양에 매년 상경시켜(來朝) 토민처럼 직첩을 주기도 하였다.¹⁰⁹⁾ 또한 조선에서는 이런 여진인들의 생필품을 공급하고 돌보아 왔으므로 이들은 조선에 정치·경제적으로 복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령과 변장들이 탐욕하여 군민을 침학하는 것도 모자라 오랑캐 마을에서 좋은 말과 모물을 매매하면서 혈값으로 사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우러러 섬겨 俯育해 주기를 바라는 여망을 끊어버려서 원망하여 亂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형세상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¹¹⁰⁾

1594년(선조 27) 6진의 藩胡 중 가장 잘 귀순하였던 穩城의 번호마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변장과 수령들이 지나치게 탐포하여 침학함으로써

109)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28일 임진.

110) 『선조실록』 권56, 선조 27년 10월 16일 경신.

점차 인심을 잃은 소치로 판단되었다.¹¹¹⁾ 즉 前 府使였던 田鳳은 탐포하고 침학하는 것이 가장 심하여 瞿麥을 통사에게 주어 번호에게 나누어 주며 1斗마다 黑貂 1령을 징수하는데, 관아에 출근하여 일을 볼 때는(坐起) 먼저 품질 좋은 초피를 앞뜰에 걸어놓고 정해진 치수와 수량(見樣)대로 賁納하게 하되, 만약 제때에 납입하지 않으면 번호들을 잡아다가 엄하게 형장을 가하여, 여러 해 동안 귀순한 온성의 모든 번호들이 하루아침에 반란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수령들이 여진인들에게 초피를 으레 다 거두어들이면서 여진인들이 자주 원망하고 반역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¹¹²⁾ 그리고 이것은 소위 ‘泥湯介의 난’으로 대표되는 두만강 유역 번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광범위한 여진인들의 이탈을 가져왔으며, 임진왜란 이후 부잔타이와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번호 첼페라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번호 첼페로 호인의 부락이 다 비워짐으로써 6진 및 삼수·갑산 지역의 초피·서피·虎皮·土貂皮 등의 공납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초피와 서피의 물건을 매매할 길이 없어져서 조선인들이 떠돌며 고생하는 상황이 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¹¹³⁾

V. 맺음말

조선과 여진과의 모피 교역에 있어 중심적 물품은 초피였다. 초피는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의 토산품으로 인식되었고, 후에 滿洲三寶 중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만주 지역의 특산품이었다.

111)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16일 신묘.

112)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1일 계사.

113) 『광해군일기[중초본·정초본]』 권7, 광해 즉위년 8월 16일 경오.

초피는 고대부터 활용되어 왔지만, 15~17세기 조선과 명에서 만큼의 수요와 공급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면 당시 유행한 초피라는 상품은 15~17세기 만주 지역 여진인들의 최고 히트 상품이였을지도 모른다. 조선과 명은 초피 수요의 거대한 시장이었으며, 그 공급은 만주 지역에서 담당해 왔다. 만주 지역의 여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과 명이 만든 對여진정책들을 교묘히 이용해 오면서 초피를 통해 공적·사적 무역을 확대해 왔다.

특히 조선에 있어 여진과의 사적 무역의 확대를 주도한 것은 바로 초피였다. 조선의 백성들은 국가의 공납을 위해, 상인과 변장들은 사적 이익의 확대를 위해, 수령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여진과의 초피 교역을 이용했다. 여진인들은 조선에 초피를 팔고, 대신에 우마와 철물 등을 받아왔는데, 이는 여진인들의 농업 발달과 생산력을 향상시켰고, 자신들의 군사 무기들을 발전시켰다.

한편 압록강 유역의 만포에서 이루어진 초피의 사적 무역은 건주삼위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건주위의 경우 조선과의 교역보다는 명과의 교역이 훨씬 절대적이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조선과의 초피 무역의 한 축은 분명 건주위와 인접한 만포라는 곳이었다.

두만강 유역의 5진 역시 여진과의 초피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곳은 조선인들과 변호라고 불리는 여진인들의 부락이 가까이 있어 초피 무역이 더욱 활발했다. 초피 무역의 결과 두만강 유역에서의 경제 상황은 점차 역전되어 조선인들보다 여진인들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5진에서는 초피 공납과 이에 따른 변장들의 수탈을 피해 조선인들이 여진인들의 마을에 도망하는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었다.

17세기가 되면, 만주의 여진인들은 부족의 통합을 거듭하여 마침내 누르하치가 後金を 성립시켰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통합에는 오랫동안 서서히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발전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

은 당시 여진 지역에서의 농업의 발전과 상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5~17세기 초피라는 만주 지역의 특산품이 여진의 사회·경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중초본·정초본])

『經國大典』

『憲宗純皇帝實錄』

김미형, 2016, 『조선전기貂皮 수요층의 확대와 밀무역 성행』,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선민, 2016, 『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 『명청사연구』 46

김순남, 2011, 『16세기 조선과 野人사이의 모피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박정민, 2015,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문화사

한성주, 2014, 『조선의 對女眞關係와 6鎭지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_____, 2018, 『근세 한·중·일의貂皮 무역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河内良弘, 1971, 『明代東北アジアの貂皮貿易』, 『東洋史研究』 30(1)

투고일 : 2018년 5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25일

■ Abstract ■

Prevalent trading of Sable(貂皮) between Joseon and Jurchen, and its Influences

Han, Seong jo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ince establishment of Joseon, the Jurchen had provided local products like furs and thick minks called sables to Joseon. They gave their local products in exchange for iron works and other gifts from the Joseon, making these exchanges at yeok (驛) or village stations and or at gwan (館) or official trading posts in the capital.

Joseon began prohibiting the trade of iron goods with Jurchen. The representative, unique product was sable(貂皮) among fur, which could be exchanged with iron goods of Joseon. From then times, sable was popular in Ming dynasty so that sable trading between Ming dynasty and Jurchen was prevalent. Sable was popular in Joseon too. In the middle period of Joseon, some ordinary people wore these sables. The Joseon government asked Pyeongan-do province and Hamgyeong-do to provide sables as tributes. However, the quality and production capacity was not on par with the Jurchen's. So quality sable was mostly imported from Jurchen in Manchuria. Popularity of sable was connected to prevalent private trading.

Joseon people exchanged iron goods, ox, and horse with sable for tribute-merchants for profit. This broke the law. As long as Joseon did not abolish the giving of sables as tributes, private trading in sables could not be controlled. Rather merchants gathered to Bukdo (北道) like the clouds. In the period of Yeonsan-gun and Joongjong, sable trading was more prevalent.

This was partially because of local governors who should regulate such trading. Chief officers and boundary commanders conspired with ministers in

central government and even led sable trading with Jurchen. Chief officers in the northern area were actively involved in sable trading. For example, they opened Gwansi (關市) indiscriminately.

As iron goods of Joseon were sent to Jurchen through sable trading, some worried that Jurchen could make iron arrow and iron armor. Flow of iron products into Jurchen drove development of military weapon in the Jurchen.

And flow of iron goods, ox, and horse to Jurchen unfavorable influenced the economic and military situation. For example, people should plow field or rice field by manpower only instead of using ox or horse. As a result, some say that the Jurchen grew stronger, while Joseon became impoverished. Furthermore, the use of horses in the army declined in the Hamgyeong-do. The number of soldiers also decreased accordingly. People there wandered around the country because they could not satisfy the burden tribute of sable.

Fence in Tumen River basin was called Fence(藩籬)·Boundary Jurchens(藩胡) and so on and were subjects under the Joseo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However, the economic situation reversed with sable trading. Jurchen people were seen as greater than the Joseon people. Some Joseon people crossed the border into Jurchen. Boundary commanders overexploited sables from Jurchen or restricted purchasing. This led to Jurchen unrest. At last, this caused the Jurchen to invade Joseon. With the rebellion of Fence, Jurchen separated from Joseon.